

제288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회의록 (부록)

목 차

- 제288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발의의안.....2면
- 제288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검토보고서.....19면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2025. 2. 18.(화) 11:00

성주군의회 본회의장

제288회 성주군의회 (임시회)

제 6 차 본 회 의 발 의 의 안

〈 의 안 목 록 〉	〈 발 의 자 〉
1. 성주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교강의원외6인】
2. 성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호의원외5인】
3. 성주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우의원외6인】
4.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익봉의원외6인】



성 주 군 의 회

성주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교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일자 : 2025. 발의자 : 구교강, 이화숙, 김경호,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1. 개정이유

지방의원의 준수사항 중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행위도 징계대상으로 보완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징계대상(청렴의무, 품위유지, 회피의무 등 위반 행위) 및 적용기준 추가(별표 2)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하 . . 의원 . . ”를 “이하 “의원””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제8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2조, 제3조 및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성주군회의의원 (이하 <u>· · 의원 · ·</u>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8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u>별표 2를 준용한다.</u></p> <p>1. ~ 6. (생략)</p> <p><u><신설></u></p>	<p>제1조(목적) ----- ----- -----이하 <u>“의원”</u>----- ----- -----.</p> <p>제8조(징계 등) ----- ----- ----- ----- ----- ----- -----다 -----만 징계기준은 <u>별표 2에 따른다.</u></p> <p>1. ~ 6. (현행과 같음)</p> <p><u>7. 제2조, 제3조 및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u></p>

현행			개정안		
【별표2】 징계기준(제8조 관련)			【별표2】 징계기준(제8조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65조제4항 위반) 	경고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1. 겸직신고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43조제6항 위반) 	경고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수익계약체결 제한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리거래금지 위반 ○ 수익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익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수익계약체결 제한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리거래금지 위반 ○ 수익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익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청렴의무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세 ○ 면탈 ○ 금품수수 - 직무와 관련 금품 등 수수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품위유지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주운전 - 면허취소 - 면허정지 ○ 범법행위 ○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 이용 및 무단유출 ○ 성폭력, 성희롱 ○ 모욕, 폭언 등 기타 품위 손상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회피의무 위반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 위반	경고, 공개사과
			6. 그 밖의 위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 ○ 알선·청탁 금지, 국외 활동제한 등에 관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참고사항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성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일자 : 2025. 발의자 : 김경호, 이화숙, 구교강, 김성우, 여노연, 장익봉

1. 개정이유

성주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으로 종합건강검진 및 단체보험 등 직원 건강증진 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직원복지를 향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후생복지사업 조항 추가(안 제7조제6호)
 - 종합건강검진, 단체보험 등 직원 건강증진 사업 추진

3. 조례안 : 붙임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종합건강검진, 단체보험 등 직원 건강증진 사업 추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u><신설></u></p> <p>6. (생략)</p>	<p>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 ----- -----</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종합건강검진, 단체보험 등 직원 건강증진 사업 추진</u></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성주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일자 : 2025. 발 의 자 : 김성우,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김종식, 여노연 장익봉
--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자치법규개선”권고에 따라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 공개 등 연구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반영하여 정책개발 및 의정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의 안건 심의에 대한 제척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나. 정책개발비 회수에 관한 사항(안 12조)
- 다.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공개에 대한 사항(안 14조)

3. 조례안 : 붙임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제5항 중 “중지할”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로 한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성주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u><신 설></u></p>	<p>제6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 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 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 사·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 서 회피하여야 한다.</u></p>
<p>제12조(연구활동비의 지원 등) ① ~ ④ (생 략) ⑤ 연구활동 계획을 임의로 변경 하거나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구활동비의 지원을 <u>중지할 수 있다.</u></p>	<p>제12조(연구활동비의 지원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u>중 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 비를 회수 할 ---.</u></p>
<p>제14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 출 등) ①·② (생 략) <u><신 설></u></p>	<p>제14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 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성주 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u></p>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익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일자 : 2025. 발의자 : 장익봉, 이화숙, 구교강, 김경호, 김성우, 김종식, 여노연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과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청 제한 고지에 관한 사항 (안 제79조의2)

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참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83조의2)

3. 규칙안 : 붙임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방청 제한 고지) 의장 또는 위원장은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8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를 “자문에서 제척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당사자는 제4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⑦ 의장은 의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제83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③ (생략)</p> <p>④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p> <p>1. ~ 4. (생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제79조의2(방청 제한 고지) 의장 또는 위원장은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안내하여야 한다.</u></p> <p>제83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자문에서 제척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u>⑤ 당사자는 제4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u></p> <p><u>⑥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u></p> <p><u>⑦ 의장은 의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임기 중이라</u></p>

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 ⑥ (생략)

⑧ · ⑨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2025. 2 18(화) 11:00
성주군의회 본회의장

제288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의안 검토보고서

〈 의 안 목 록 〉	〈 발의 및 제출자 〉
○ 성주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교강의원외6인】
○ 성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호의원외5인】
○ 성주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우의원외6인】
○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익봉의원외6인】



성 주 군 의 회

성주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의원의 준수사항 중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행위도 징계대상으로 보완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징계대상(청렴의무, 품위유지, 회피의무 등 위반 행위) 및 적용기준 추가
(별표 2)

3.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 의견없음(2025. 1. 22. ~ 2. 4.)

나.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46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방의회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징계대상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보다 청렴하고 도덕적인 지방의회의원의 책무를 제고하고자 위반행위별 징계 기준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성주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으로 종합건강검진 및 단체보험 등 직원 건강증진 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직원복지를 향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후생복지사업 조항 추가(안 제7조제6호)
 - 종합건강검진, 단체보험 등 직원 건강증진 사업 추진

3. 참고사항

- 가. 조례안 예고 : 의견없음(2025. 1. 22. ~ 2. 4.)
- 나.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7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성주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으로 종합건강검진 및 단체보험 등 직원 건강증진 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만, 성주군의회 소속 공무원도 후생복지사업의 근거를 명문화하기 위해 추후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성주군 소속 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주군의회 의원연구단체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영향평가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공개 등 연구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반영하여 정책개발 및 의정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의 안건 심의에 대한 제척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나. 정책개발비 회수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다.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공개에 대한 사항(안 제 14조)

3. 참고사항

- 가. 조례안 예고 : 의견없음(2025. 1. 22. ~ 2. 4.)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연구단체 심사위원회에서 위원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할 경우 안건 심의에서 제척·회피하고, 연구활동 최종결과보고서를 공개하여 의원 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의정연구활동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과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청 제한 고지에 관한 사항(안 제79조의2)

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참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83조의2)

3. 참고사항

가. 조례안 예고 : 의견없음(2025. 1. 22. ~ 2. 4.)

4. 검토의견

- 본 개정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과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고, 윤리심사자문 위원회의 참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본 규칙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